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(안)

(유동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-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3. 10. 14.  
발의자 : 유동균·장영숙·윤동현·  
이필레·김수진·김순금·  
서종수·한일용·조남진·  
오진아 의원(10명)

### 1. 개정이유

- 「주택법」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및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관리주체 등이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각종 재난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,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함.  
(안 제4조의2)
  -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    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2.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주택법」 제43조, 제43조의3, 제49조, 제50조
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, 제118조

「서울시 주택조례」 제9조의2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2조,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예산 편성 필요

다. 입법예고 : 필요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제8항”을 “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”으로, “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”를 “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”으로, “쾌적한 주거환경조성”을 “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”을 “공동주택 관리·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

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----- -----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-----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----- -----.
제2조(지원계획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2조(지원계획)① ----- ----- -----공동주택 관리·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 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(안)

(유동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-86
----------	-------

발 의 연 월 일 : 2013. 10. 14.  
발 의 자 : 유동균·장영숙·윤동현·  
이필레·김수진·김순금·  
서종수·한일용·조남진·  
오진아 의원(10명)

### 1. 개정이유

가. 「주택법」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및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사업계획 승인대상이지만 관리주체 등이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각종 재난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,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함.  
(안 제4조의2)

-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  -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-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

-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주택법」 제43조, 제43조의3, 제49조, 제50조
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8조, 제118조

「서울시 주택조례」 제9조의2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2조,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예산 편성 필요

다. 입법예고 : 2013. 10.15. ~ 2013. 10.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3조제8항”을 “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”으로, “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”를 “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”으로, “쾌적한 주거환경조성”을 “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”을 “공동주택 관리·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

1.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제43조제8항 및 제43조의3----- -----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-----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---
제2조(지원계획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2조(지원계획)① ----- ----- -----공동주택 관리·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 1.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.

“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”



# 마포구



수신자    마포구의회의장  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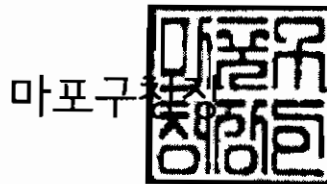
제목  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

---

1. 마포구의회-5048(2013.10.15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재정을 수반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우리부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: 검토 의견서 1부.    끝.



★주무관    한상진    주택관리팀장    송기원    주택과장    10/18 김석원

협조자

시행    주택과-35453    (    2013.10.18.    ) 접수    마포구의회-5153    (    2013.10.21.    )

우    121-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(성산동)    /www.mapo.go.kr

전화    02)3153-9307    /전송    02)3153-9349    / hansjdool@mapo.go.kr    / 공개



<사는 구는 달라도 번호는 하나! 120>  
<앞으로는 집에서 「민원 24」로 처리하세요!>



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 의견

[담당자 : 주택과 한상진주무관(3153-9307)]

조례 개정안	검 토 의 견	
	내용	검 토 사 유
안 제1조	수정	적정
안 제2조제1항	수정	적정
안 제4조의2	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현행 주택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(시스템 관리 포함)와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</li> <li>◇ 부서의견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구 예산으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부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므로, 지원조례 개정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부담이 없이 구 예산으로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</li> </ul>